6. 학생복지시설운영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(이하 "대학교"이라 한다)의 학생복지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(2021.6.22.개정) 제2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.

- 1. 도서관(열람실을 제외한 시설물), 컨벤션홀, 은총관
- 2. 생활관, 학생식당, 운동장
- 3. 기타 관리,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복지시설

제3조 (사무관장) 기획관리처장은 복지시설의 운영과 이용에 있어서의 사무를 관장한다. (2019.2.8.개정)

제4조 (사용) 시설 사용은 [별지1호서식]의 신청서를 총무과에 제출하고 기획관리처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외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 및 면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획관리처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내규에따라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. (2019.2.8.개정)

제5조 (사용방법) 시설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
다만,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개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무과로 그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알려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 (용도변경)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. 다만, 필요에 의하여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무과로 신 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7조 (이용 및 관리) ① 각 시설의 관리를 위임받은 시설이용자 또는 단체는 시설의 비품 및 기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
- ② 시설의 기자재 및 비품이 파손 및 훼손된 경우에는 이용자(위임받은자)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- ③ 시설에는 개인 소유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, 도난 시 대학교 또는 대표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다.
- ④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.
 - 1. 실내에서의 음주 및 흡연, 고성방가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.
 - 2. 승인받지 않은 시설물 또는 부착물은 즉시 철거한다.
 - 3.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물질, 전열기구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.
 - 4. 숙식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.
- ⑤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이를 점검할 수 있다.

제8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규정)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의무실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최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	NO. 교내시설 사용 신청서
사 용 자	단체명 (신청인) 책임교수 연락처 이메일
사 용 일 시	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 (일, : ~ :)
사 용 인 원	명
사용목적	
사용시설	도서관 □ (호) 컨벤션 □ 은총관 □ 식 당 □ 운동장 □ 기 타 □ ()
특이사항	(음향시설등 지원 희망 사항 기재)
※ 행사 ※ 준수 1. 시설 2. 교니 3. 교니 4. 교니 5. 이용 6. 주치	이 교내시설 사용을 신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계획이 있으면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. 사항 물의 파손은 사용자가 책임진다. 시설 사용 중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진다. 시설 사용 중에 나온 쓰레기는 사용자가 정리, 회수한다. 에서는 어떠한 취사행위도 할 수 없다. (지정장소 제외) 시간을 준수한다. 는 주차 구역에만 주차한다. 기기는 총무과와 협의 후 사용하며 사용 후 전원을 끈다.
	20 년 월 일
사용· 20 (지시 및 확인	신청인 (서명) 승인통보일 · · · · !사항) 급 담당 과장 처장 재